사내동호회 운영지침

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

전부개정 2022. 12. 29. 지침 제385호 개정 2023. 12. 18. 지침 제412호 (상임이사·지원·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속된 사내동호회의 등록·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임직원들 상호간 친목향상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사내동호회"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재직 중인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통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호인 단체를 말한다. 다만, 이러한 단체 중 직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구성된 종교모임은 제외한다.
- 2. "주관부서장"이란 「직제규정 시행세칙」 별표 5에 따라 임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의 장을 말한다.

제2장 사내동호회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사내동호회에 적용한다.

- 제4조(등록요건 및 신청) ① 사내동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사내동호회의 활동계획이 제2조제1호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- 2. 심사평가원에 재직 중이며 사내동호회 회비를 납부하는 10명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, 3급 이상의 임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3. 사내동호회의 활동계획에는 연 2회 이상 등록회원 2/3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사내동호회가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내동호회 등록신청서 1부
- 2. 회칙 1부
- 3. 회원명단 1부
- 4.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동계획서 1부
- 제5조(등록승인) 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제2항에 따른 사내동호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내동호회 등록 및 관리대장을 사내동호회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- 제6조(회원가입 및 탈퇴) ① 회원 가입 및 회비 원천징수는 각 사내동호회 총무가 사내동호회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.
 - ② 회원 탈퇴 및 회비 원천징수 중단은 사내동호회 총무 또는 회원이 주관부서에 신청을 하고, 주관부서가 사내동호회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.
- 제7조(서류의 작성·보관) 사내동호회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 - 1. 회칙
 - 2. 회원명단
 - 3. 회계장부 및 기타 부수장부(회비납부대장 및 사업시행 관련서류 등)
- 제8조(분기지원금) ① 사내동호회는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분기지원 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분기지원금 신청서 1부
 - 2. 지원금 수령 통장 입출금내역서
 - 3. 기타 지원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

-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내동호회별 분기지원금을 별표1의 분기지원금 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③ 주관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사내동호회 별로 매 분기 첫 달 내에 분기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제9조(특별지원금) ① 사내동호회가 공식대회에 참가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행사 진행시 주관부서에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, 사내동호회는 행사 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특별지원금 신청서(첨부자료 포함)를, 행사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행사 결과보고서(첨부자료 포함)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내동호회가 제출한 특별지원금 신청서와 행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후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2에 따른 대회(행사)규모별 지원금 및 경비는 사내동호회 요청 시 행사 전 지급할수 있으며, 행사 후 실제 참석인원 및 실시내용에 따라 정산한다.
- 제10조(행사지원금) ① 사내동호회가 사내 행사를 개최하거나 심사평가원 행사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행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, 사내동호회는 행사 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행사지원금 신청서(첨부자료 포함)를, 행사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행사 결과보고서(첨부자료 포함)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내동호회가 제출한 행사지원금 신청서와 행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후 행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3에 따른 행사 규모별 지원금 및 경비는 사내동호회 요청 시 행사 전 지급할 수있으며, 행사 후 실제 참석인원 및 실시내용에 따라 정산한다.
- 제11조(변경사항의 통보 등) ① 사내동호회는 대표자 또는 총무를 변경하거나 회원의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사내동호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사내동호회는 활동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른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

다.

- ③ 사내동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내동호회 해산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등록취소 및 지원의 제한) ① 주관부서장은 사내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내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사내동호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
 - 2.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11조에 따른 활동 및 통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② 주관부서장은 사내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동호회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.
 - 1.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 및 제3항,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
 - 2. 주관부서장의 자료보완 요청 또는 열람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등록 후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사내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- 제13조(등록승인의 유효기간) 사내동호회의 등록승인은 사내동호회의 해산 또는 주관 부서장의 등록취소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.
- 제14조(보칙) 본부 사내동호회의 등록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3.12.18.>

부 칙 <2022. 12. 29., 지침 제385호>

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12. 18., 지침 제412호>

(상임이사·지원·지원·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)

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분기지원금 평가기준표

□ 지급액

| 원천징수 회원 (월평균) | 수 | 원천징수 금약 (1인당, 월평군 | | 외부강사료 (월평균)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인원(명) | 점수 | 금액(원) 점수 | | 금액(원) | 점수 | |
| 50명 이상 | 50 | 15,000원 이상 | 25 | 50만원 이상 | 25 | |
| 40명 이상 | 40 | 10,000원 이상 | 20 | 40만원 이상 | 20 | |
| 30명 이상 | 30 | 7,000원 이상 | 15 | 30만원 이상 | 15 | |
| 20명 이상 | 20 | 5,000원 이상 | 10 | 20만원 이상 | 10 | |
| 10명 이상 | 10 | 3,000원 이상 | 5 | 10만원 이상 | 5 | |
| 10명 미만 | 0 | 1,000원 이상 | 3 | 10만원 미만 ~ 0원 초과 | 3 | |

- * 원천징수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.
- * 원천징수 금액이 1,000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.

□ 세부산출기준

| 구분 | 세부 산출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천징수 회원수 (월평균) | 직전분기 원천징수 회원 수 ÷ 3개월 (기관운영시스템 활용) |
| 원천징수 금액 | 직전분기 원천징수 총액 ÷ 원천징수 회원 수 ÷ 3개월 |
| (1인당, 월평균) | (기관운영시스템 활용) |
| 외부강사료 | 직전분기 외부강사료 지출액 ÷ 3개월 |
| (월평균) | (분기지원금 수령 통장 입출금내역서로 증빙) |
| 지원금 산출 | 해당동호회 점수 |
| (천원미만 절사) | 분기별 배정예산 × 전체동호회 총 점수 |

[별표2]

특별지원금 산출기준

□ 지급액

- 대회(행사) 규모별 지원금 + 경비 + 물품비
- 지급액 상한은 행사지원금과 합산하여 연 600만원

□ 세부 산출기준

- **대회(행사) 규모별 지원금**(정액지급)
 - 공식대회(행사) 참가 기본금(교통비 포함)

| 참가 회원수 | 10인 미만 | 10~20인 미만 | 20~30인 미만 | 30인 이상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지원금 | 20만원 | 30만원 | 40만원 | 50만원 |

- 대회 참가비(보건복지부 주관 대회 참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)
- 경비(정액지급)
- 식비: 1인당 1일 20,000원(최대 2일)
- 숙박비: 1인당 1박 50,000원(최대 1박)
- 물품비(실비지급)
- 행사에 필요한 물품, 장비 등 구입 또는 대여 비용
-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및 행사 후 지출 증빙 필요

[별표3]

행사지원금 산출기준

□ 지급액

- 행사 규모별 지원금 + 경비 + 물품비
- 지급액 상한은 특별지원금과 합산하여 연 600만원

□ 세부 산출기준

- 행사 규모별 지원금(정액지급)
 - 행사 개최 기본금(교통비 포함)

| 참가 회원수 | 10인 미만 | 10~20인 미만 | 20~30인 미만 | 30인 이상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지원금 | 20만원 | 30만원 | 40만원 | 50만원 |

○ 경비(정액지급)

- 식비: 1인당 1일 20,000원(최대 2일)

- 숙박비: 1인당 1박 50,000원(최대 1박)

- **물품비**(실비지급)
- 행사에 필요한 물품, 장비 등 구입 또는 대여 비용
-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및 행사 후 지출 증빙 필요

사내동호회 등록신청서

| 동호회명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설립일자 | | 년 | 월 | | 일 | |
| 회 장 | (소속) | (2 | 직급) | | (이름) | |
| 총 무 | (소속) | (2 | 직급) | | (이름) | |
| 회원수 | | | 명 | | | |
| 주요활동 | | | | | | |
| 위 성실히 준 등록을 신 | | | | | | · 제반규정을 사내동호회로 |
| | 칙 원명단 ·동계획서 | | | Ļ | d 4 | 릴 일 |
| | | | 회총 | 장 무 | <u>'</u> | 를 글 (인) (인) |

활동계획서

| 동호 | 회명 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|
| ○ 활동 | 동 계획 | | | | | | |
| 연번 | | 활동내용 | 참여 | 인원 | 소요ㅂ | 비용 | 활동주기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ं ग्रह | 타 사항 | | | | | | |
| | | | | 1 | 년 | 월 | 일 |
| | | | 회 총 | 장 무 | | | (인) (인) |

사내동호회 등록 및 관리대장

| 1.51 | | -33 3 | -1. 1 | | | 회비계좌 | | ,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|
| 명칭 | 등록일자 | 쥐소일자 | 회장 | 회장 총무 | 은행명 | 계좌번호 | 예금주 | 비고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_ |

분기지원금 신청서

| 동호 | 회명 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회 | 장 | (소속) | | (ろ |]급) | | (이름 | <u>:</u>) | | |
| 총 | 무 | (소속) | | (Z |]급) | | (이름 | <u>!</u>) | | |
| 회원 | ^원 수 | | | 명(직전 | 분기 | 말일 기 |]준) | | | |
| _ | 활동내용 (직전분기) | | | | | | | | | |
| 첨부 | | | 분기 사· 수령 통 ⁷ | | | | | 니다. | | |
| | | | | | | | 년 | 월 | 일 | |
| | | | | | 회 총 | _ | | | (인) (인) | |

특별지원금 신청서

| 동호회명 | | |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회 장 | (소속) | (직급) | (이름) |
| 총 무 | (소속) | (직급) | (이름) |
| 대회명(주관) | | | |
| 대회기간 | 20 | .() ~ 20 . | () |
| 대회장소 | | | |
| 참가인원수 | | | |
| 신청금액 | 일금 | 원정(₩ |) |
| | | | |

상기와 같이 사내동호회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첨부 1. 대회 관련 문서 등 증빙자료

- 2. 신청금액 산출내역서
- 3. 참가인원 명단

년 월 일

회 장 (인)

총 무 (인)

행사지원금 신청서

| 동호회명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|-----|
| 회 장 | (소속) | (직급) | (이름) | |
| 총 무 | (소속) | (직급) | (이름) | |
| 행 사 명 | | | | |
| 행사기간 | 20 . | () ~ 20 . | (|) |
| 행사장소 | | | | |
| 참가인원수 | | | | |
| 신청금액 | 일금 | 원정(₩ | |) |
| 첨부 1. 행사 2. 신청금 | 사내동호회 행사지원 세부계획서 금액 산출내역서 인원 명단 | 원금을 신청합니다 | | |
| | | Ļ | 년 월 | 일 |
| | | 회 장 | | (이) |

총 무

(인)

행사 결과보고서

| 동호회명 | | 지원금 유형 □ 특별 □ 행사 |]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행 | 사 명 | | |
| 행 사 | 행사내용 | | |
| 개 | 일시 | | |
| 뀽 | 장소 | | |
| | 참가인원수 | | |
| | 사 사진 개 이상) | | |
| | 첨부 | 참석자 서명록 물품비 지출 증빙자료(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등 | -) |

사내동호회 해산보고서

| 동호회명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산사유 | | | | | | | |
| 해산일 | | 년 | | 월 | | 일 | |
| | 동호회의 해 | | 합니다. 회 | 호회 운 장 무 | -영지침 | | 조제3항에 일 (인) (인) |